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19. 정을호 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7.24.)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2.6.)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을호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정호 의원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대출 금리) ① (생략)	제11조(대출 금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u>120퍼센트</u>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 ----- ----- ----- <u>110퍼센트</u> -----.

최근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금리의 상한을 낮춰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도모하여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임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출사업의 특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출 및 상환을 통하여 운영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특성상 조달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원리금의 상환율,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금리를 결정¹⁾한다는 점을 고

1)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정부 보증 하에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지원

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장학재단의 재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대출금리 상한을 낮출 경우 학생들의 저금리 혜택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나, 조달금리가 인상되는 상황하에서는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어 한국장학재단의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학자금대출 금리는 매년 조달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운용되고 있는 등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물가상승률,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현황 >

연 도		'18	'19	'20	'21	'22	'23	'24
물가상승률*		1.50%	0.40%	0.50%	2.5%	5.1%	3.6%	2.9% (5월 기준)
조달금리**		2.54%	2.38%	1.35%	1.82%	4.05%	3.85%	진행 중
대출 금리	1학기	2.20%	2.20%	2.0%	1.7%	1.7%	1.7%	1.7%
	2학기			1.85%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조달금리: 신규 채권 및 기존 채권의 가중평균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학자금대출 금리의 상한을 재단채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자금대출 제도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문제 제기의 우려와 함께,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는 '21년 1학기부터 1.7%로 동결해왔고, 이는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재단채의 실제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및 조달금리 비교 >

(단위: %)

구분	국채 5년물 직전 3년 평균 수익률 (A)	금리 상한		재단채 조달금리		현행 금리(1.7%) 수준	
		현행 (A*120%)	개정안 (A*110%)	5년물 직전 3년 평균금리	당해 학기 평균금리	현행 대비	개정안 대비
'21-1학기	1.722	2.066	1.894	1.868	1.42	82.3%	89.8%
'21-2학기	1.572	1.886	1.729	1.717	1.93	90.1%	98.3%
'22-1학기	1.510	1.812	1.661	1.666	2.82	93.8%	102.3%
'22-2학기	1.643	1.971	1.807	1.815	4.41	86.3%	94.1%
'23-1학기	2.028	2.433	2.230	2.277	3.55	69.9%	76.2%
'23-2학기	2.376	2.851	2.613	2.663	4.13	59.6%	65.1%
'24-1학기	2.815	3.378	3.096	3.121	3.55	50.3%	54.9%
'24-2학기	3.138	3.765	3.451	3.451	-	45.2%	49.3%

자료: 교육부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정을호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